

# 한국상사중재의 국제화와 경쟁력

조정곤\*

- I. 서 언
- II. 국제경쟁력에 대한 최근의 논의
- III. 국제경쟁력의 요소와 평가
  - 1. 중재의 경쟁력 요소
  - 2. 기존논의의 기준과 평가
  - 3. 판정승률에 의한 평가
  - 4. ICC의 중재통계와 국제성
- IV. 결 어

---

\*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1996학년도 강릉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I. 서 언

기업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상거래활동에는 국내상거래보다 더 큰 유형무형의 위험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이것이 중국에는 표출된 갈등의 형태인 분쟁으로 외형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에의 노출을 우려하여 기업들은 계약당시부터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사전 중재조항이나 또는 사후의 중재합의만으로는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거래분쟁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중재의 3요소라 불리는 "중재장소, 중재기관, 중재규칙"을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중재기구의 것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중재의 결과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제적으로 중재의 유치를 위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이 국제상거래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간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기업은 협상에서 여러모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다른 언어, 낯설은 법규정, 잘 알지 못하는 중재인, 정보수집의 곤란, 시차의 존재 등은 한국 기업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상거래분쟁을 한국내에서 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내의 중재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상사중재가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여타 세계인들로부터 공정하고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중재로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는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상사중재의 국제화수준을 살펴보고,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코자 함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 국제중재기구들간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요소는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중재에 대한 연구로는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법리연구〔유해민, 1991; 장문철, 1993〕나 외국의 중재제도 또는 법규에 대한 해설 내지 비교연구〔유병현, 1991; 양병희, 1991; 김상수, 1992; 손한기, 1993〕, 그리고 중재제도의 질적 내용개선을 위한 연구〔조정곤, 1993 & 1994; 김선정, 1994〕

등으로 그 유형이 대별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재의 국제적 장소선택문제에 대한 연구[장효상, 1985]가 있다. 대부분의 중재에 대한 연구가 국제중재기구의 중재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마쓰우라(松浦馨)[1993], Tang Houzhi(唐厚志)[1993], 장문철[1994] 등의 연구가 발표되는 등 중재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고 있고, 김성수[1996]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재판소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중재절차를 달리 디자인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연구보고[Mnookin, 1994]가 발표되었고, 중재인의 행위 및 공정성에 대한 연구[Ashenfelter 1984; Bader, 1994; Zubrod, 1994], 중재절차중 대체분쟁해결기법의 활용[Tashiro, 1994]에 대한 연구,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중재협상결과[Crawford, 1982]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중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세계 각국의 중재사건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미흡한 이러한 분야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낯선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외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의 상사중재를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중재제도가 국제적인 성가와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중재를 활용하여 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비교우위요소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즉, 이 서론부분에 이어, 국제경쟁력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알아 보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의 요소를 추출한 다음,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 기준에 한국의 중재를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중재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분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II. 국제경쟁력에 대한 최근의 논의

### 1. 장문철의 제안<sup>1)</sup>

한국의 현재 중재제도로 외국 중재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① 중재이용 당사자에게 중재인선정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중재기관, ② 잘 알지 못하는 중재절차를 강요하는 중재기관, ③ 외국 변호사를 중재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중재기관, ④ 법원이 중재판정을 재심사(judicial supervision)하는 등 효력이 불분명한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기관, ⑤ 국가기관에 의존도가 높은 중재기관, ⑥ 중재의 역사가 일천하여 국제무역분쟁의 전문중재인을 육성해 놓고 있지 못한 중재기관 등은 중재이용자가 기피하게 된다.

뒤늦게 국제중재지로 출발하였고, 지리적·정치적 장점도 별로 없으며 현재 국내에 세계적인 전문 국제중재인들을 육성해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국제중재이용자들의 구미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UNCITRAL 모델법의 채택을 제안하고 중재기관은 중재당사자의 私的自治를 최대한 보조하여 외국 중재이용자의 구미에 맞도록 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직 그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나 최근에 새로 나타난 국제중재지로서 국내법적 장애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하고, 분쟁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중재기관은 중재의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경우인데,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 2. 중재인간담회(1994. 12.)<sup>2)</sup>

한국에서 중재와 재판제도를 비교해 보면, 중재의 장점은 사안의 실제적 진실

1) 장문철,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재」 제263호, 대한상사중재원, 1994 1월, 4~7쪽

2) 대한상사중재원 21세기를 향한 상사분쟁해결선진화, 「중재」 제274호, 1994 12, 19~26쪽

구명에 보다 유리하다. 소송은 사건의 폭주로 인하여 기일지정이 3주 단위로 6개월 내지 1년까지 진행되는데 1회기일 소요시간이 짧게는 1분, 증인신문의 경우 30분 이내여서 집중심리가 어렵다. 이에 비해 중재는 월등한 비교우위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중재는 전문가에 의한 쟁점판단이 법원보다 좋다. 법원은 짧게는 6개월, 길어야 2년마다 재판부의 인사이동이 있어 전문지식의 축적이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중재는 화해에 의한 해결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법원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집행판결없이 채무명의를 받아 집행이 가능하나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을 받았어도 다시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비와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집행이 거부되기도 하는 경우까지 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쉽게 집행판결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중재판정의 경우 오히려 어렵다. 앞으로 중재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집행에 관한 용이성을 어떻게 갖느냐가 필요하다[손경한 변호사].

좋은 중재는 좋은 중재인이, 좋은 판결은 좋은 판사가 내린다. 따라서 중재에 있어서는 중재인 선정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약 600여명의 중재인이 확보되어 있지만 거래형태나 분쟁내용별로 중재인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선정되고 어떻게 중재절차가 진행되는가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분야별 전문중재인단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중재는 중재 본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소송절차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중재판정부에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고 당사자 대리인이 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이나 증거절차 채택과정 등이 소송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진행이 관례화되어 중재의 좋은 점이 사라진다면 중재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며 중재의 기피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재가 단심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단심에 따른 위험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해운사건의 경우 한국의 법원이나 중재원이 관할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관할을 영국이나 미국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피원인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적인 중재센터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유록상 변호사].

법원의 소송사건은 증가추세이나 중재원의 중재사건은 담보상태이다. 이것은 법원이 소액심판제도의 도입, 조정제도의 신설 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또한 국내중재의 경우 의뢰자는 비용이나 시간이라는 요소보다 판정의 공정성을 더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절차와의 차별성을 홍보

하고 전문중재인의 확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제중재에 있어서는 외국중재기관과 절차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국제거래의 경우 제3국의 중재기관을 희망하는 이유가 그 명성뿐 아니라 신뢰성에 있는 것 같은데 대한상사중재원은 아직 이에 못미치는 것 같다. 즉, 국제중재스텝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3국적의 중재인을 선택코자 할 때 어려움이 많다. 이외에도 절차의 신속성,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절차로 인정받을 만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이재후 변호사).

컴퓨터, 반도체, 특허 분야 등을 다루기에는 법대출신이 대부분인 법원판사보다 전문성이 있는 중재인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인 중재판정부가 3인 중재판정부보다 시간낭비를 덜 한다. 증인신문시에 “예, 아니오”식으로 답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진술하게 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호응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인지대가 중재비용보다 저렴하므로 중재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계약서에도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황병일 변호사).

중재사건에서는 법적 심판보다는 전문성을 통한 신속·공정성의 잣대를 통한 경제적 정의에 맞는 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박혜건 변호사). 세계 각국은 법제, 관습, 문화 등이 상이하나 소송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제에 정통한 법관이 판단하므로 타국의 당사자들은 불신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들이 자유로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중재인은 대부분 경험과 학식, 그리고 인격을 갖춘 인사들로 선정되므로 더욱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중재의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도 있다. 세계의 사적 분쟁해결 추세는 대체분쟁해결로 가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의 선호도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는 소송에 비해 우호적인 절차이고 결과에 대한 불만도 더 적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소송에 의한 해결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손태빈 교수).

국제간의 상관행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보다 중재가 제도적으로 더 적절하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비롯한 중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재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전준수 교수).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지지 않으려는 기업의 풍토가 계약서에 중재조항 삽입을 기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재인을 초빙하고, 대한상사중

새원의 위상에 대한 정부 및 경제단체의 인식을 새롭게 하며, 중재기구의 조직 및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중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아가 중재판정사례를 주간지나 신문지상에 게재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이균성 교수].

건설계약서 작성시 중재조항을 삽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중재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건설업법 제32조 11번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위반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건설업법 제15조의 “건설의 분쟁조정위원회”관련 규정에 중재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적용범위를 “상거래” 뿐만 아니라 “상거래 및 건설거래”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김문한 교수].

해사중재의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선정하는 2인의 중재인은,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가 온정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 당사자에게서 독립하여 심판하기 어려우므로 최악의 경우 중재불능의 사태에까지 이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재인 수 기수의 원칙”을 고수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유규환 사장].

분쟁사안에 부적합한 사람이 중재인으로 선정되어서는 중재가 잘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인후보자에게 중재인취임수락을 요청할 때에는 사무국에서 양 당사자의 분쟁사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담긴 관련서류들을 중재인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장중재인으로 취임하였을 때에는 중재판정문 작성에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판정문 작성능력을 고려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집중심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중재절차의 신속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김용복 교수].

중재를 비롯한 대체분쟁해결방법이 소송과 비교하여 경쟁력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직권조사의 강화, 판단자료수집의 다양화, 엄격한 증거법칙 및 조사절차의 배제 등 절차간소화, ② 중재인들에 대한 교육, ③ 중재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재인수당의 현실화, ④ 영어 등 외국어 소통능력, ⑤ 국내중재법과 국제중재법을 분리하여 국제중재법에는 UNCITRAL 모델법(1985)을 도입, ⑥ 교통, 보험 등에 대한 중재서비스 확대제공, 대법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 ⑦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중재인명부는 당사자가 단순 참고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김병준 변호사].

### 3. 배기민의 의견<sup>3)</sup>

1995년 WTO체제의 출범과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합류해 나가는 세계화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은 우리나라의 상사중재분야에서도 새로운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국제수준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질의 서비스란 세계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을 말하고, 또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외국의 중재이용자가 안심하고 한국에서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한국중재법규를 국제조류에 맞게 개정 및 보완, ② 소송에 대한 중재의 비교우위요소 가운데 특히 중재인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국내의 중재인을 다수 확보, ③ 대체분쟁해결제도의 도입, ④ 중재담당직원들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⑤ 업무전산화를 통한 분쟁의 신속해결 도모, ⑥ 산학협동의 강화를 통한 분쟁해결의 전문성 제고 등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한국중재의 세계경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 4. 김성수의 제안<sup>5)</sup>

국내중재의 분쟁해결기능을 국가사법기관인 법원의 분쟁해결기능과 대비시켜 보았을 때, ① 시간적 측면, ② 비용 측면, ③ 전문성있는 판정부 선정 측면, ④ 기업비밀 보장 측면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중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① 상설중재기관의 관료주의적 운영, ② 중재인들의 직권심리주의적 시각, 그리고 ③ "구경꾼없는 전시장"처럼 중재이용자가 중재의 효율성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① 상설중재기관은 공공봉사정신에 기초한 자세를 갖추 필요가 있고, ② 중재인

3) 배기민, 상사중재의 세계화, 「중재」(1995-봄), 대한상사중재원, 4-5쪽

4) 배기민, 상사중재의 세계화, 「중재」 제275호(95-봄), 대한상사중재원, 4~5쪽

5) 김성수, 외국중재기관과의 비교를 통한 중재활성화 방안, 「중재」 1995-가을, 대한상사중재원, 13-19쪽 김성수,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과의 비교를 통한 중재활성화, 한국중재학회 발표논문, 1996 5 17., 2~3쪽



의 자세나 자질에 관한 재교육의 필요성, ③ 중재제도에 대한 충분한 선전제몽과 홍보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국제중재의 국내에서 소송대비 경쟁력뿐만 아니라 외국 중재기관과 비교했을 때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중재판정은 국내의 법원판결과는 달리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승인 및 집행이 보장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제도, 제도운영, 그 효능에 대해서 검토하여 한국 중재제도의 경쟁력 강화에 참고할 요소를 간추려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범세계적 중재인단의 구성, ② 쟁집정리제도(Terms of Reference)의 도입, ③ 중재판정문 초안에 대한 사무국의 검토, ④ 중재심문장소의 호텔이용, 판정문의 디스켓수록 송부 등 신속한 중재심문과 판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⑤ 중재비용의 합리적 결정 및 저렴화, ⑥ 법조인들 모임에 참여하여 중재제도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 5. 손경한의 제안<sup>6)</sup>

중재제도가 한국에서 선호되지 않는 요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미리 대비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분쟁 및 그 해결에 대한 의식구조로 인하여 사전 중재계약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분쟁발생 후의 중재합의는 어려운 실정이다. ② 중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많다. ③ 환경오염피해분쟁, 금융분쟁, 보험분쟁, 증권관련분쟁, 소비자분쟁, 방송언론분쟁, 저작권·소프트웨어 관련분쟁, 특허·상표분쟁 등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임의적·강제적 조정제도가 창설됨으로써 중재의 대상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④ 중재는 중재인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그 절차진행이 각각 달라 법원에 의한 재판제도만큼 국민들의 공신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 ⑤ 중재판정을 집행하려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일반인들은 중재절차를 재판의 전 단계인 일종의 前審節次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들도 한국의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거부사

6) 손경한,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 「중재」(1995-가을), 대한상사중재원, 5~12쪽

유가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보다 더 넓어 우리나라의 법원에 의하여 집행이 거부될 위험성이 있어 한국에서의 중재를 기피하고 있다.

한국중재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① 강연회의 개최, 민사소송법 교과서 중 중재에 관한 장을 신설, 분쟁법 강좌의 개설 등을 통한 분쟁해결 및 중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② 해사, 건설, 기술(지적소유권), 환경, 교통 보험, 금융, 증권 등 전문상사 영역에서의 중재를 확대해 나간다. ③ 중재를 포함하는 표준구매주문서 또는 표준매도확약서의 약관을 만들어 배포하고, 국제계약체결시 피고지주의를 채택한 중재조항을 삽입하며, 약관상 자국에서의 재판 또는 중재를 강제하는 분쟁해결조항을 둔 경우 이 조항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시정을 명하게 한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업이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쟁해결을 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법령 또는 내규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④ 국제적으로 중재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중재사건의 거래형태나 분쟁내용별로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성 확보의 차원에서 중재인을 전문영역별로 분류하거나 국내외사건별로 구분하고, 중재인에 대한 평가작업이 요구된다. ⑤ 중재는 어차피 단심제로 신속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속성과 경제성보다는 적정성과 공정성에 기본원칙을 둘 필요가 있다. 중재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중심리제를 채택하고,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대폭축소하여 집행절차를 간이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이 현행 중재제도를 아직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중재법을 개정하여 당사자가 미리 중재합의에 규정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6. 김광수의 연구<sup>7)</sup>

한국에서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調停과 협상에 관해서는 학계나 법조계의 관심밖에 방치되어 왔다. 때문에 분쟁당사자들은 대부분 법원

7) 김광수, 상사조정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 「중재」 제278호(1995-겨울), 대한상사중재원, 65쪽

의 사법절차에 의존하여 분쟁을 해결해 왔다. 이에 따라 김광수는 조정의 이론적 배경, 세계 각국의 조정관습 및 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 문화권의 국가들은 조정을 전통적인 것으로 많이 활용해 왔다. 특히 중국은 조정이 성행하여 변호사가 15,000명인 데 비하여 조정인은 1,000만명에 이르고, 지역인민조정위원회(Local People's Mediation Committees)는 일년에 평균 700만건을 처리하며 이 중 90%가 합의해결된다.<sup>8)</sup> 인도네시아의 국가중재원은 중재절차 진행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JCAA)는 조정규칙을 갖고 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증대되는 분쟁수요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 분쟁처리기관을 육성하고 국민들의 협상기술 증진과 협상 그 자체 인식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재는 상사분쟁 해결 스펙트럼 중심에 중재와 소송이 위치하고 그 주변에 사적 화해, 알선, 조정 등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조정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할 때, 상사분쟁을 보다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7. 김홍규의 연구<sup>9)</sup>

UNCITRAL 중재규칙이나 모델법이 각국의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체로 두 가지 태양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가 UNCITRAL 중재규칙이나 모델법을 전혀 수정없이 그대로 자국의 중재법 또는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으로 채택하거나 또는 극히 근소한 수정을 가해서 일괄해서 채택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 또는 지역은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키프로스, 홍콩, 나이지리아, 스코틀랜드, 페루, 멕시코, 버뮤다, 튀니지 등이다. 다른 하나는 UNCITRAL 중재규칙 또는 모델법을 개개의 조문·규정을 취사선택해서 부분적으로 그 나라의 중재법이나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채택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이다.

8) 김광수, 앞의 책, 71쪽. Lemonine D. Pierce, "Mediation Prospers in China" *Dispute Resolution Journal*, AAA, 1994., p.21에서 재인용

9) 김홍규, 한국중재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중재학회지」 제6권, 한국중재학회, 1996, 20-21쪽

우리나라는 1973년에 중재법을 한 차례 개정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1973년, 1989년, 1993년, 1996년의 네 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UNCITRAL 중재규칙이 채택된 이후인 1989년, 1993년, 1996년의 개정에 있어서는 UNCITRAL 중재규칙을 최대한으로 수용하여 세계 각국의 상설중재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절차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개정에는 있어서는 UNCITRAL 중재규칙 또는 모델법을 충분히 수용하여 현대사회의 법적 현실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현행 중재법에서 추상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나 중재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규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중재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중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보다 더 간소화하는 절차규정을 중재법 속에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의 충실과 국제경제사회에 있어서 신용도를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Ⅲ. 국제경쟁력의 요소와 평가

#### 1. 중재의 경쟁력 요소

중재가 소송에 비해 대가가 적게 드는 대체분쟁해결 수단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중재의 이용도를 제고시킬 수 없다. 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분쟁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고, 중재의 특성을 십분 살릴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되고 축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재절차와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제도의 이용에 문제가 있다 함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외형적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상의 근본적인 필요충분조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분쟁당사자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누가 더 센 힘을 갖고 있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① 이해관계 접근방법, ② 권리접근방법, ③ 권력접근방법이다. 이해관계 접근방법은 권리접근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보람이 있으며, 권리접근방법은 권력접근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보람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sup>10)</sup>

이해관계, 권리, 그리고 권력의 세 가지 다른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 접근방법은 각각 다른 비용과 편익을 낳는다. 이것들을 비교하는 데에는 네 가지 기준이 있다. 즉, 해결비용, 결과에 대한 만족, 상호관계에 대한 영향, 그리고 분쟁의 재발 등이 그것이다.<sup>11)</sup>

“해결비용”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변화시킴으로써 분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절차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로 변화시킴으로써 분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재는 소송의 대체분쟁해결 수단으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중재제도의 존재 자체는 소송외적 대체분쟁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에 대한 만족”기준은, 분쟁당사자의 만족도는 해결결과가 처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클레임을 제기토록 했거나 거절토록 한 이해관계를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만족도는 또한 분쟁당사자가 그 해결결과가 공평하다고 믿는가에 달려있다. 비록 합의내용이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전부 만족시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쟁당사자는 해결결과와 공평성에서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만족도는 해결결과가 공평하다고 인식하는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절차가 공평하다고 인식하는가에도 의존한다. 공평성에 대한 판단은 몇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즉, 분쟁당사자는 자기주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졌는가, 조정안의 수락이나 거부에 대한 통제권을 가졌는가의 여부, 조정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자신이 참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만일 제3자가 개입되었고 그 제3자가 1인이었다면 그 제3자가 공평하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믿음이 그것이다. “상호관계에 대한 영향” 기준은 당사자들의 상호관계에 대

10) Ury, Wilham L, Brett, Jeanne M, Goldberg, Stephen B., *Getting Disputes Resolved (Designing Systems to Cut the Costs of Conflict)*, Jossey-Bass Publishers(1989) p.xi

11) 다섯번째 평가기준은 절차의 공정성인데, 이것은 분쟁해결절차의 공평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Lind, E A., and Tyler, T. R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 York Plenum, 1988을 참조

한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접근방법은 일상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발"기준은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말함은 익히 아는 바와 같다.

이 네 가지 다른 기준은 서로 관련이 있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상호관계에 긴장을 낳고, 긴장은 분쟁재발의 원인이 되며, 재발은 해결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네 가지 다른 비용들은 으레 함께 증가하고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분쟁비용으로서 네 가지 모두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편리하다. 어떤 특정 접근방법을 언급할 때 "高비용"이나 "低비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지 해결비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불만족, 상호관계의 긴장, 분쟁의 재발 등도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제도가 대체분쟁해결방법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상의 제반요소들을 기준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재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① 이용가능한 절차(procedures available), ② 동기부여(motivations), ③ 기법(skills), ④ 다양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자원(resources to use various procedures) 등이다.

우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절차로서 중재절차가 대체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직전에 언급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중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재이용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협의를 동기부여로는 중재강좌 개설, 표준중재조항의 배포, 표준계약서에 중재조항 삽입,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국제거래에 중재조항 삽입, 중재제도 설명회, 중재의 이점과 활용방법 안내, 무료상담, 판정사례 출간 및 배포, 모의상사중재에 대한 지원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 상사중재규칙을 어려운 한자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는바, 지적 수준이 상당하지 않고서는 상사중재규칙을 이해하고 이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중앙이나 지방에서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자로 된 상사중재규칙을 해독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상사중재제도의 요체를 이루고 있는 상사중재규칙부터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한글로 작성·배포할 필요가 있고, 규정자체의 문구도 될 수 있는 한 구어체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중재제도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위주의 홍보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광의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는 공정성, 신뢰성, 신속성, 저렴성, 비공개성, 국제적 승인 및 집행 가능성 등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중재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과감한 개선을 통해 중재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중재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교육, 심문기일간격 및 심문회수 단축, 업무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sup>12)</sup> 국제중재센터로서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고 제3국간 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을 대폭 수용하고 그에 따른 중재판정규칙을 제정·시행하였고, 중재판정에 대한 대외신뢰도 제고 및 선진중재기법의 도입활용을 위하여 외국거주중재인을 다수 영입하는 등 세계화 내지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다.<sup>13)</sup> 또한 20개국의 20개 외국중재기관과 중재협정도 체결하였고, 9개국 14개 외국중재기관과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해 놓고 있다.<sup>14)</sup>

중재기법(skills)의 향상을 위해 중재인에 대한 교육 및 평가가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중재판정부를 지원해주는 스태프진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문이 법원의 판결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중재고유의 비교우위요소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중재판정고유모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sup>15)</sup>

마지막으로 다양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자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원에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있다. 인적자원으로는 중재인, 중재스태프진이 그 중심이 되고, 물적자원으로는 예산, 판정관련시설 등이 있다. 아울러 중재이용자에 대한 안내서비스 및 편의시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에서의 중재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①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를 소송과 비교할 때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중재의 독점적 우위요소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② 한국이라는 장소적 위치가 국제사회에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계의 수많은 중재가능지역을

12) 백승오, 중재사건의 실태분석과 동향(1990-1994), 「중재」 제275호 (1995-봄), 대한상사중재원, 18~19쪽.

13) 이순우, 한국중재제도의 진로와 저변확대, 「중재」 제283호 (1997-봄), 대한상사중재원, 4쪽

1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83호 (1997-봄), 119~122쪽 참조

15) 조정근, 무역분쟁에서 상사중재판정모형의 개발, 「중재학회지」 제4권, 한국중재학회, 1994

놓고 경쟁하였을 때, 한국이 선택될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가들이 한국에서 중재하는 것을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기피한다면 한국의 중재제도는 동아시아지역에 초점을 맞춘 중재상품을 개발하여 장소적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③ 중재기구의 비교우위를 갖추어야 하므로 한국의 유일한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타국의 중재기구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재인명부, 서비스 등이 관련될 것이다.

이상의 제반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당한 대응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한국의 상사중재가 국제화와 경쟁력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제반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을 통해 분석한다. 여기에서 세 가지 기준이라 함은 ① 기존의 논의에서 드러난 평가요소들, ② 판정승률, ③ ICC중재통계 등을 말한다.

## 2. 기존논의의 기준과 평가

기존 논의자들의 한국상사중재에 대하여 평가언급한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한 다음 언급내용이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에 따라 정리해 본 것이 <표 1>이다.<sup>16)</sup> 이 <표 1>의 내용은 한국의 상사중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내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므로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반드시 형평에 맞다고는 할 수 없는 한계점과 함께 논의자들의 평가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의뢰인측 변호사에게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는데, 승자측과 패자측이 서로 다르게 응답하였다.<sup>17)</sup> 기존의 대체적 의견들 가운데 명백한 것은 중재의 신속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호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16) 최종백, 김기섭, 손경환, 유록상, 이재후, 황병일, 박혜진, 손태빈, 진준수, 이균성, 김문한, 유규환, 김용복, 김병준, 장문철, 김성수(이상 무순) 중재인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delphi technique을 활용하여 중재전문가들의 견해를 앞의 문헌기술을 통해 수렴한 것이다.

17) 이순우, 상사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저렴성, 「중재」 제245호, 1992 7월 20~21쪽 (표8)을 참조



〈표 1〉 중재인의 한국상사중재에 대한 요소별 인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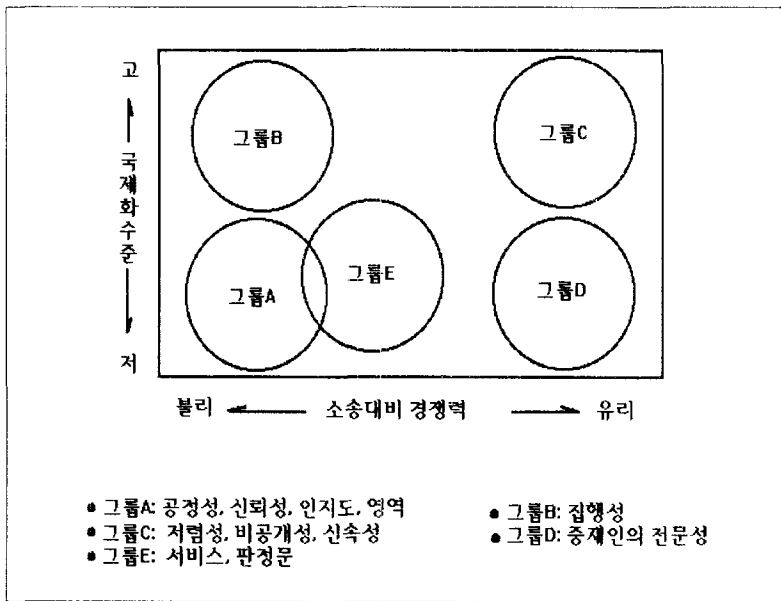
평가요소	인급 횟수		
	긍정적	보통	부정적
인지도	1		7
공정성		1	5
신속성	5	4	2
신뢰성	1		6
전문성	4	2	2
저렴성	2	1	2
중재인	1	1	8
판정분			2
영역확대	2	2	2
집행성			3
서비스			5
비공개	3		
총합	19회	11회	44회

그러나 중재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고,<sup>18)</sup> 특히 중재인의 자질향상과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거듭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중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강한 개선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국제화에 걸맞는 수준을 바라는 의견도 있다. 중재비용의 저렴성과 영역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에서 중재비용을 재판비용과 비교했을 때, 변호인과 사건의뢰인의 인식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변호인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건의뢰인은 중재비용이 재판비용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sup>19)</sup>

18) 1991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던 클레임 센서스에 응답한 무역업자들 가운데 수출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는 13.8%, 삽입하지 않는 경우는 69.3%로 나타났다. 삽입하지 않는 이유 중 제일 주된 것은 당사자간의 직접교섭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다 「중재」 제243호 (1992. 5), 대한상사중재원, 30쪽.

중재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라든가 중재인명부에 다국적 국제중재 전문가를 올려 놓는 일은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절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재의 국제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재인단명부에 외국인을 113명 포함시키고 있다.<sup>20)</sup> 즉, 중재인단명부 인원 752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13명을 외국인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것은 1994년 현재 중재인단 598명 중 외국인 중재인후보자가 20명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3.3%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국제화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중재인의 자격을 “피선정 당시 한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제한하던 중재규칙<sup>21)</sup>을 새로운 중재규칙에서는 개정하여 거주지제한 요건을 철폐함으로써 국제중재로서의 결격사유를 제거하였다

〈그림 1〉 한국 상사중재의 국제화와 경쟁력에 대한 인식



19) 이순우, 상사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저렴성, 「중재」 제245호, 1992. 7월 18쪽(표6)을 참조

20) 김홍규, 한국중재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3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중재심포지움 발표논문집」, 대한상사중재원, 1996 10, 95쪽

21) 구 상사중재규칙 제18조(중재인의 자격)

중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를 비롯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1996년 10월에 개최된 ICCA 총회도 한국의 상사중재제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중재인 선정 방법의 개선에 대한 심층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류하여 그룹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즉, 그룹A에는 공정성, 신뢰성, 인지도, 영역, 그룹B에는 집행성, 그룹C에는 저렴성, 비공개성, 신속성, 그룹D에는 중재인의 전문성, 그리고 그룹E에는 서비스, 판정문 등의 요소들이 각각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그룹B의 중재판정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재가 소송에 비해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국내중재판정의 경우 중재가 소송보다 집행이 곤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은 모든 요소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룹A, B, D의 위치에서 그룹C의 위치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sup>22)</sup>을 도입하는 등 중재법규를 정비하고 있지만, 중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은 이러한 차원으로만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는 중재의 공정성 및 신뢰성과 관련한 하나의 요소로서 판정승률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3. 판정승률에 의한 평가

ICC의 중재판정문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고, 다만 일부를 발췌하여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에 게재하고 있다. ICC는 이 판정사례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두 권의 중재판정사례집을 발간하였는데, Collection of ICC Arbitral Awards (1974-1985) 와 Collection of ICC Arbitral Awards (1986-1990)이 그것이다.<sup>23)</sup> 그러나 이 중재판정사례집만으로는 판정승률을 산출해내기가 부적절하였다.

또한 중국의 해상중재판정사례집<sup>24)</sup>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일반적인 상사중

2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1996-가을), 118~120쪽 참조.

23) Stephen R. Bond(ICC 전 사무총장 현재 White & Case에 세직중)의 협조가 있었음

재판정사례와는 그 성격이 달라서 중재판정승률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였다. 예컨대, 해상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1차로 선박충돌의 원인을 조사하여 선박충돌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원만히 합의하라고 화해를 권유하는 판정을 한다. 그 다음에 2차로 당사자의 화해결과 등에 따라 특정금액의 지불을 명하는 형태의 중재판정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사중재판정과는 그 양태를 달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재판정의 비공개라는 특성상 일본에서 이미 발간된 판정사례집을 중심으로 한국과 판정승률을 비교하였다.<sup>25)</sup> 일본 국제상사중재협회의 중재판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일본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중재신청한 대외국제중재사건에서의 판정승률은 69.6%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승률은 외국기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중재신청한 대내 국제중재사건에서의 판정승률 33.1%보다 월등히 높고, 일본기업간의 국내중재사건에서의 판정승률 47.7%보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추세분석을 하기에는 판정사례의 수가 적고, 한국과 비교하기에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일본에서의 상사중재판정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우대성향이라는 의심을 살만한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표 2>에서 보듯이 일본 중재에서의 중재판정부는 미국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일본은 이와 같은 과거의 부진한 중재활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외국의 변호사들에게 일본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sup>26)</sup>

<표 2> 일본 상사중재판정의 승률(1953~1973)

일련 번호	신청인 국적	피신청 인국적	중재인 국적(수)	청구금액 (R)	판정금액 (A)	승률 (A/R, %)			판정일자
						대외	대내	국내	
1	한국	일본	JPN(1)	US\$ 7,301.78	US\$ 5,964.00	81.7			53.10. 6.
2	이태리	일본	JPN(1)	US\$ 5,000.00	US\$ 625.00		12.5		55. 1.25.

24)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A Selection of Awards and Conciliation Statements (1984-1988)*

25) 일본의 상사중재판정 승률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일본 국제상사중재협회의 무나가타 요시토시(宗像善俊) 이사장, 하토리 히로시(服部弘) 参与 등을 만나 중재판정결과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기존에 발간된 1973년 이전의 판정사례집이 전부라는 답변을 들었다

26) JCA Newsletter, February, 1997, Cover Story: "Foreign Lawyers Gain Right to Represent a Party in Japan - Special Measures Law Amended"

3	일본	미국	JPN(2)	¥ 4,174,844	¥ 2,771,244	66.4			57	8.23
4	일본	일본	JPN(3)	¥ 1,949,173	¥ 168,383			86	58	7.3
4†	일본	일본		¥ 1,314,797	¥ 1,314,797			100	58	7.3
5	일본	일본	JPN(3)	¥ 16,072,492	¥ 5,333,053			332	60	5.30
6	일본	일본	JPN(3)	£ 16,420.10/4	£ 10,376.10/7			63.2	60	5.30
7	미국	일본	JPN(2)	US\$ 208,149.18	US\$ 0		0		61	12.25
7†	일본	미국	USA(1)	US\$ 119,265.76	US\$ 0	0			61	12.25
8	일본	일본	JPN(3)	¥ 101,843,960	¥ 101,843,960			100	62	9.27
8†	일본	일본	JPN(1)	¥ 155,892,900	¥ 9,091,308			5.8	62	9.27
9	일본	홍콩	JPN(1)	¥ 808,157	¥ 808,157	100			64	2.14
10	일본	이란	JPN(1)	US\$ 54,254.00	US\$ 44,847.10	82.7			66	2.24
11	利薊	일본	JPN(1)	¥ 2,351,871	¥ 1,200,000		51		69	9.30
12	일본	일본	JPN(3)	¥ 113,080,680	¥ 0			0	70	4.13
13	일본	미국	JPN(2) USA(1)	US\$ 631,501.13	US\$ 624,457.80	98.9			70	9.18
14	캐나다	일본	JPN(1)	US\$ 39,911.05	US\$ 20,000.00		50.1		72	9.22
15	캐나다	일본	JPN(3)	US\$ 2,177,685.51	US\$ 69,161.74		3.2		73	6.25
16	일본	일본	JPN(1)	¥ 16,621,705	¥ 8,301,267			49.9	73.12	4
총 합	판정승률누계					348	198	360.7	907.2	%
	판정사건 수					5	6	8	19	건
	판정평균승률					69.6	33.1	45.1	47.7	%

자료: 日本 社團法人 國際商事仲裁協會, 「仲裁判斷要約集」, 1980年 3月.

†: 반대신청 사건

<표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평균승률

구 분	승률의 누계	사건의 수	평균승률
국내 중재 사건	4,242.4%	79건	53.7%
대내 국제중재사건	1,892.6%	47건	40.3%
대외 국제중재사건	568.2%	6건	94.7%
총 합	6,703.2%	132건	50.8%

한편, 한국의 법원 전담사건재판 제22부에서 1994. 3. 1부터 1995. 2. 28까지 1년간 대석판결한 47건의 사건을 분석해보면 평균승소율은 62.1%이다.<sup>27)</sup> 또한 한국의 중재판정승률을 알아 보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발행하는 월간 「중재」지에서 조사대상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1981년 1월호부터 1991년 12월호까지 11년간 「중재」지에 소개된 모든 중재사건인 132건의 중재판정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1992년이후부터의 중재사건의 사례들은 국내중재사건과 국제중재사건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연구대상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사실 월간 「중재」지에 소개된 중재판정사례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중재판정사례를 싣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정도이므로, 본 연구의 표본은 전수조사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 대외국제중재사건과 국내중재사건의 평균승률은 각각 94.7%와 53.7%인데 비하여 대내국제중재사건의 평균승률은 40.3%로 전체표본 132건의 평균승률 50.8%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외국제중재판정의 승률은 대단히 높은 반면, 대내국제중재판정의 승률은 전체의 평균승률보다도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재사건 당사자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중재판정승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이 내국인에게는 유리한 반면 외국인에게는 불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국제중재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데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중재제도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중재판정은 그 승률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외국인에게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의 중재판정승률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승률이 일방적으로 한일 양국에게만 유리한 경향을 띠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추후 세계 각국의 중재판정승률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7) 서울지방법원의 「(표2) 대석판결사건 절차진행상황(47건) (1994. 3. 1 ~ 1995. 2. 28)」를 재분석한 결과임

#### 4. ICC의 중재통계와 국제성<sup>28)</sup>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ICC)와 미국중재협회(AAA),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에 관한 통계를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4〉 ICC-AAA-KCAB 중재신청건수 비교(단위: 건)

연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ICC	205	235	285	250	262	267	291	296	339	334
AAA	na.	na.	na.	na.	6448	6688	6363	6777	7937	8910
KCAB	na.	na.	na.	na.	34	58	66	70	70	57
년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ICC	285	304	309	365	na.	na.	na.	na.	na.	na.
AAA	9536	10979	12220	13603	na.	na.	na.	na.	na.	na.
KCAB	79	54	56	36	51	71	68	72	79	109

〈표 4〉에서 보듯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신청 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중재협회의 상사분쟁 중재신청건수는 절대적인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지만 거의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sup>29)</sup> 이에 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건수는 그동안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1990년 이래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불경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중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5〉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의 중재사건을 수임한 중재인들의 국적이 대체로 40개국을 상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재인들의 구성이 어떠한가 하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1인 중재인보다는 3인 중재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8) Sigvard Jarvin, et al., *Collection of ICC Arbitral Awards (1986~1990)*, Kluwer, 1994, pp. 561-563.

29) 이순우, 상사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저렴성(미국의 실례를 중심으로), 『중재』 제244호, 대한상사중재원, 1992. 6, 13쪽

〈표 5〉 ICC의 중재판정부

연 도	'3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중재인 국적수	34	25	38	38	38	49	46	44	44	41	49
판정부 3인		55	47	58	64	57	58	62	62.1	62.3	58.3
(%) 1인		45	53	42	36	43	42	38	37.9	37.7	41.7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단은 1990년 451명, 1991년 500명, 1992년 530명의 중재인(후보자)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은 1990년 23명으로 5%, 1991년은 21명으로 4%, 1992년은 19명으로 3%를 각각 점유하고 있었다.<sup>30)</sup> 전체 중재인단의 중재인 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외국인의 점유비율은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에서의 중재가 국제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재인 국적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가 중재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단명부 인원 752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13명을 외국인으로 배정하였고, 중재인 자격의 거주지제한요건을 철폐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이 중재인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ICC처럼 일반화되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중재인보수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거의 무료로 봉사하도록 요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재절차가 장소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진행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sup>31)</sup> 이러한 중재장소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표 6〉에서 보듯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가 정하는 비율이 1980년의 46.8%에서 1990년에는 13.8%로 현격히 줄어든 반면,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ICC 중재재판소가 확인해 준 비율은 86.2%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체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장소는 현장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동 중재원의 판정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표 7〉은 ICC중재를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서유럽에서 ICC중재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북미지역과 아시아·대양주에서의 이용도가 점증하고 있고, 중동지역에서는

30) 백승오, 최근 3년간 중재사건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방향, 「중재」 제255호, 1993. 5월, 25쪽.

31)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Kluwer, 1994, p.



〈표 6〉 ICC 중재재판소의 중재장소

연 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단위
결정주체	중재재판소가 결정	46.8	47.6	37.4	33.3	18.5	32.1	19.5	22.1	20.6	14	13.8	%
	당사자 결정을 확인	53.2	52.4	62.6	66.7	81.5	67.9	80.5	77.9	79.4	86	86.2	%
위 치	국가의 수	21	31	20	23	29	31	29	24	31	32	29	個國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표 4〉에서 보았듯이 ICC가 취급하고 있는 중재사건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대양주에서의 ICC중재 이용도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중재가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표 7〉 ICC의 중재당사자들의 지역별 분포 (단위 %)

연 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서유럽	60	63.5	62	57.2	56.9	52.5	54.9	56.5	57.1	56.2	59.8
중앙·동부 유럽	8	2.4	5.8	3.8	4.1	2.6	3.5	3.7	4.2	2.2	2.3
중동	10	6.6	5.8	8	7.4	5.9	7.4	4	5.1	5.1	4.3
북아프리카	5	4.8	3.9	5.1	6.6	5.6	6.2	6.2	4.3	4.4	3
아프리카	2	4.4	2.5	3.1	3	4.2	3.2	4	5.5	5.5	2.2
북미	10	7	9.1	12.5	10.5	15.3	15	13.5	13.1	12.9	14.9
중미·카리브지역	2	3.7	5.8	3.4	4.9	4.2	3.5	3.8	4.1	4.4	2.3
아시아·대양주	3	7.6	5.2	6.9	6.6	9.7	6.3	8.4	6.6	9.3	11.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8〉 ICC중재 당사자들의 국적

연 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국가의 수	61	75	60	80	70	81	89	77	86	90	94

〈표 8〉에서 보여 주고 있는 ICC중재 당사자들 국적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ICC중재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

〈표 9〉 ICC중재의 재분류(단위: %)

연 도	'82	'83	'84	'85	'86	'87	'88	'89	'90	추세
국제무역	37.3	31.5	33.3	33	35	31.8	26	26	27.1	감소
라이선스·기술이전·특허	8.6	10	7.8	13	11	13.3	17	18	16.4	증가
합작투자 및 산업협력	12.7	11.9	14.1	5	8	4.7	2.4	5.4	6.5	감소
대리점 및 유통	6	5.1	8.3	7	7	14	10.7	13	17.1	증가
건설	17.1	25.3	28.7	28	24	18.5	26.4	21	18.9	불변
금융 및 은행	7	0.9	4.2	1	4	6	5.2	6	5.8	불변
기타·해상운송·보험 등	11.2	15.3	3.6	13	11	11.6	12.3	10.6	8.2	불변
합 계	99.9	100	100	100	100	99.9	100	100	100	

〈표 10〉 ICC중재의 분쟁금액(단위: %)

연 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추세
\$5만 미만	9.2	8.2	10.5	8.6	12.8	6.1	3.8	5.8	5	4	감소
\$5만~\$20만	22	22	20	19.5	14.8	11.2	13.9	15.1	14.5	12.5	감소
\$20만~\$100만	19.5	32.1	30	26.2	24.4	23.8	24.4	20.6	25.5	30	불변
\$100만~\$1천만	11.3	24.4	31	25.7	28	31.4	33	39.9	34.1	30	불변
\$1천만 초과	8	13.3	8.5	13.8	13.6	9.8	8.4	7.4	12.7	11.3	
금액 불명	-	-	-	6.2	6.4	17.7	16.5	11.2	8.2	12.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중재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변화 요소에도 주목을 하여야 할 것이다.

ICC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재사건을 그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표 9〉은 국제무역, 합작투자 및 산업협력 분야의 중재사건은 그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라이선스, 기술이전, 특허, 그리고 대리점 및 유통 분야의 중재사건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재사건의 비율이 점증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문중재인단을 갖추어 놓는 것부터 시작하여 중재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야는 국제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이고, 국내중재분야조차도 개발되지 않은 분야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표 9〉에서 보듯이 ICC중재도 국제무역, 건설 분야와 관련한 분쟁의 비중이 제일 크므로 기본적인

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중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표 10〉에서 확연히 나타나 있듯이, ICC중재에서는 20만달러 이하의 중재사

〈표 11〉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금액<sup>32</sup>

연 도	'90			'91			'92		
	건수	비율(%)	88.9	건수	비율(%)	84.3	건수	비율(%)	81.7
\$5만 미만	19	52.8			25		49.0		
\$5~\$30만 미만	13	36.1		18	35.3		27	38.0	
\$30만~\$100 미만	1	2.8		6	11.8		7	9.9	
\$100만 이상	3	8.3		2	3.9		6	8.4	
합 계	36	100.0		51	100.0		71	100.0	

〈표 12〉 ICC와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비용 비교<sup>33)</sup>

분쟁금액 예시	관리요금		중재인수당		
	ICC	KCAB	ICC		KCAB
			최저	최고	
\$ 10,000	\$ 2,000	\$ 300	\$ 2,000	\$ 2,000	\$250
\$ 50,000	\$ 2,000	\$ 1,050	\$ 2,000	\$ 2,000	\$250
\$ 100,000	\$ 3,500	\$ 1,550	\$ 2,750	\$ 12,500	\$250
\$ 200,000	\$ 5,000	\$ 2,050	\$ 3,550	\$ 17,500	\$250
\$ 500,000	\$ 9,500	\$ 2,800	\$ 5,950	\$ 32,500	\$375
\$ 1,000,000	\$14,500	\$ 4,050	\$ 8,450	\$ 47,500	\$500
\$10,000,000	\$30,500	\$26,550	\$22,450	\$121,500	\$625
\$100,000,000	\$65,500	\$251,550	\$52,450	\$231,500	\$625

† 계산의 편의상, "US\$1 = ₩800"으로 가정하였음.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심문언기요금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32) 백승오, 최근 3년간 중재사건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방향, 『중재』 제255호, 1993 5월, 20쪽 〈표 4〉를 재가공한 것임

33) ICC중재비용 계산은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요율표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비용 계산은 1996년 9월 1일 시행된 상사중재규칙의 '부표'상의 요금표를 이용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수당은 ① 청구금액이 없거나 8,000만원 이하인 경우 20만원, ② 청구금액이 8,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30만원, ③ 청구금액이 4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40만원, ④ 청구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1997년 4월 현재)

건이 점차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는 ICC중재의 중재 비용이 <표 12>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의 금액별 분포는 <표 11>에서 보듯이 30만달러 미만의 중재사건이 1990년 88.9%, 1991년 84.3%, 1992년 81.7%를 점하고 있어 ICC에 비하여 소액사건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의 중재기구는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ICC 중재재판소의 비경쟁력 부문에 특화하는 틈새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점진적인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관리요금 체계는 분쟁금액이 크게 증가할수록 ICC의 중재관리요금 및 중재인수당과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어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중재청구금액이 20만 달러 정도를 넘어선 이후부터는 중재관리요금의 가산비율이 0.25%로 고정되어 있어 사건이 아주 큰 금액은 오히려 ICC보다 더 많은 관리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중재청구금액이 1억달러인 경우 ICC는 \$65,500의 관리요금을 받는 데 비해 대한상사중재원은 \$251,550의 관리요금을 받으므로 중재비용 징수금액의 크기가 요율체계상 역전되고 있다.

이렇게 분쟁금액이 큰 경우에 관리요금은 ICC보다 많이 징수하고 중재인수당은 거의 무료봉사수준에 머물다 보니 중재인이 심혈을 기울여 판정을 하리라고 당사자들은 기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액이 큰 분쟁사건은 당사자들이 한국에 중재신청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될 것이다. 분쟁금액이 커질수록 사안이 매우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쟁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뢰성있는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중재관리요금의 체계를 정비하여 관리요금 및 중재인수당을 적당히 그리고 충분히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할 때 청구금액이 너무 커서 관리요금이 많이 나올 때에는 신청금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관리요금을 40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화해로 끝날 경우 중재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수당은 실제로 무료봉사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므로 ICC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중재의 질은 중재비용에 비례한다는 속설처럼 중재인에 대한 보수가 적다면 중재인으로 선정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중재인의 전문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sup>34)</sup> 그러므로 중재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재인보수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IV. 결 어

한국의 상사중재제도를 진단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가가 비싼 소송에 대한 대체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재의 소송에 대한 경쟁력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결비용, 절차에 대한 만족, 상호관계에 대한 영향, 분쟁재발의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가 가능하다.

둘째, 중재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절차, 동기부여, 기법, 자원 등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중재의 독점적 우위요소, 지역적 장소의 비교우위요소, 중재기구의 비교우위요소에 대한 점검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당한 대응책이 마련된다면 한국의 중재가 국제화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앞에서 상사중재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통하여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진단을 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진단에 기초하여 이용자가 쉽게 그리고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재제도를 디자인한 후, 현실에 접목시켜 작동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남아 있다. 즉, 「진단→디자인→현실접목(작동가능상태로 만듦)→이용」의 절차를 밟는다.

한편,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보다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업계에는 알려져 있고,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홍보가 강화되고 있다.<sup>35)</sup> 그렇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에 대하여 홍보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업계에서는 그 반대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므로 중재의 영역확보가 문제시될 수 있다. 즉, 중재는 협상과 소송의 사이에서 협공을 당하면서 과연 고유의 비교우위요소를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분쟁은 협상으로 해결되고, 중재신청을 해야 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들이 권리주장을 강하게 하

34) 장문철, 중재기관과 관련없는 중재규칙을 지정한 중재조항의 문제점, 「중재」 제276호 (1995-여름), 대한상사중재원, 76쪽.

35) 해외건설협회, 「국제건설클레임세미나」, 1995 1, 26쪽.

여 당사자 상호관계의 단절마저도 불사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의 중재는 소송절차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중재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당사자들은 중재에 부탁하지 않고도 불평불만을 해결할 수 있기를 더 선호한다. 분쟁다발무역회사의 경우 비록 중재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중재절차에 대해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사전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사후 중재합의가 잘 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길 원하지 않는다. 물론 불리한 당사자는 고의적으로 중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중재절차를 진행시킴으로 인하여 그다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재본연의 소송대체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재업무를 2원화하여 당사자들간의 자체협상에 대한 경쟁력강화뿐만 아니라 소송대비 경쟁력도 확보·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재의 모습은 소송과 진배없을 정도로 소송절차화되었으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중재의 소송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문을 작성하려고 하는 의장중재인은 취임수락시부터 상당한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혹시 훗날에라도 중재판정의 이유로 인해서 판정이 취소될 우려도 안고 있어서 중재제도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히 중재판정이유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ICC 중재규칙 제21조의 중재판정문精査權제도의 도입은 중재의 소송대비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다.

일본에는 사단법인 국제상사중재협회의 중재판정 이외에도, 神戸海運組合의 仲裁裁定(大正2년~大正15년)<sup>36)</sup>과 社團法人 日本海運集會所の 仲裁裁定(昭和3년~昭和41년)<sup>37)</sup>이 있다 이와 같이 중재의 역사가 판정문기준으로 볼 때만 하더라도 1913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중재부문에 있어서 일본의 중재는 한국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애당초 설

36) 大正2년은 1913년에 해당함.

37) 昭和11년은 1925년에 해당함

립취지는 ICC와 같은 국제적인 중재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해외로부터의 우리나라에 대한 클레임을 처리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이미지 선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설립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실제의 중재기구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클레임처리전문 중재기구를 최근에 와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중재센터로 발돋움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모색하다 보니 중재기구로서의 명예롭지 못한 진단을 받게 되는 듯 싶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센터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클레임처리전문 무료봉사기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실수요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으로 유료화된 중재기구로 변신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어느 쪽에도 특화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닌 중재기구로서 존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여도 현재의 모순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는 이미 10년전이 되어버린 김광영 당시 사무국장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즉, 김광영은 한국상사중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① 전문가 양성, ② 국제성과 신뢰성의 증진, ③ 민간주도형 제도운영, ④ 사법재판소와의 협력강화, ⑤ 신속처리, ⑥ 중재판정부 구성제도의 개선, ⑦ 중재사업분야의 확대 등으로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나,<sup>38)</sup>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이렇다 할 괄목할 만한 개선을 찾아보기 어렵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만일 클레임처리 전문기구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인 중재기구로 특화하기로 결정한다면, 비로소 중재의 대상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재제도를 발전시키고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사분야에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미국중재협회(AAA)가 취급하고 있는 중재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듯이 한국의 중재도 그 취급영역이 이제는 상사분야에서 탈피하여 건설, 해사, 부동산, 교통, 특허, 기술, 소비자 등의 분야를 망라하여야 비로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유일한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상산업

38) 김광영, 한국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중재」 제190호, 대한상사중재원, 1987. 11월, 10~19쪽

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명실상부한 민간독립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실질적 민영화의 과도단계로서 정부에서는 총리실의 직속기구로 한시적으로 편입하여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위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닌 기구로서 존속하려 한다면, 소액클레임에 특화된 조직과 수익성 사업에 특화된 조직을 이원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중재인명부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중재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꾸준한 개선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내부개혁의 한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한국의 중재가 미래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만의 노력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외부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CC의 통계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함은 중재신청인의 국적이 세계 각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국제성·신뢰성·공정성의 지표), 다수의 국가로부터 중재인이 취임하게 되며(고객만족 서비스, 전문성의 지표), 분쟁금액은 규모가 크고(전문성·신뢰성·공정성의 지표), 중재건수도 상당히 많으며(인지도의 지표), 중재장소도 다변화되어(고객만족경영의 지표) 있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다. 한편, ICC중재와 관련한 통계는 주로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의 자료이므로 그동안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계 추세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중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 외에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언급한다면, 중재기관간의 중재에 있어서 국제경쟁은 협조적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 상황과 비슷하므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비교우위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떡을 크게 만드는 것(expanding the pie)이 낫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즉,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재기구를 발전모델로 삼되, 경쟁관계로 설정하기 보다는 협조관계로 설정하여 국제적으로 수준높은 중재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소송의 대체분쟁해결로서의 중재를 부각시켜 중재의 이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단계를 1차 발전전략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재의 이용도가 높아졌을 때, 그리고 중재기법

39) Roy J Lewicki, Joseph A Litterer: *Negotiation*, Irwin, 1985., p 119 참조



의 표준화 및 자원에 대한 확보가 용이해졌을 때 2단계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국제중재기구간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중재가 국제적인 정보화를 달성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국제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클레임 제기자들의 불만을 E-mail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DB의 작성 및 제공을 통한 클레임의 예방 및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심문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PC View를 판정실에 설치하거나, 국제적 화상회의방식을 통한 심문의 진행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한상사중재원의 정보화는 PC의 초보적 이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지옥 서울에서 원시적인 방법에 의하여 중재·알선·상담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경영의 세계적 추세에서 낙오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중재가 소송보다 분쟁해결에 유리한 점이 많다면, 사람들은 왜 굳이 중재를 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집행상의 문제일 것이다. 중재판정의 강제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설중재기관이 강제집행에 대한 안내서비스나 집행대행체제를 갖추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어디에서나 중재절차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절차가 느린 데 대해서 그리고 중재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 예컨대, 해상운송이나 해상보험을 전혀 모르는 중재인이 해운업자와 보험자간의 구상권대위에 의한 클레임을 중재한다면 중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무역분쟁의 경우, 소송은 중재보다 불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불신이 중재의 활용도를 저조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중재인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있다. 좀 다른 분야이기는 하지만, 탄광의 노사문제에서 전체 광원들의 2/3는 중재인들이 광산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면접결과 조사되었다.<sup>40)</sup> 그러므로 상사분쟁에서도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불신할 가능성이 있고, 중재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신의 이유를 따로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재인이 일방당사자의 편을 들고 있으므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믿는 경우에는 중재절차

40) Ury, p 94

중 중재인기피로 나타나거나, 중재인의 회유나 매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이 뇌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중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다.

#### ABSTRACT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s of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the winning rates in arbitral awards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analyzed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KCAB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ared with ICC.

There are so many factors to analyze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in the arbitration. From the recent literatures, arbitration experts reported and debated tremendous elements which is vital to have a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Arbitration factors such as fairness, reliability, awareness, extension, enforcement, inexpensiveness, closed and expedited proceedings, arbitrators, expert knowledge, service, arbitral award, etc. are very important to appraise the level of the glob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of arbitration organizations.

Using these factors, I appraised current level of the glob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unique arbitration organization in South Korea.

Next, we are able to compare the level of fairness using the concept of "winning rate". All over the world, only several arbitration organizations published and opened their own arbitral awards even in anonymity. The Japanese arbitration institutions published it regularly as well as the Korean.

When compared with these two institutions' "winning rates", there is similar tendency in favor of domestic corporations. That is to say, the winning rates in domestic arbitration cases are greater than thos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This embarks an implication of inequality, a part of unfairness, in these two countries' arbitration.

Finally, a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statistics of KCAB and

ICC, especially to the focus on th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arbitration tribunals, arbitration places, parties' nationalities, the types of contents, the amount of arbitration, arbitration costs. There are two meanings to keep in mind for advancement of Korean arbitration. One is to establish new strategy specializing in small amount arbitration less than US\$200,000. The other is to rearrange the panel of arbitration, especially in increasing field of arbitration cases such as the disputes of license, technology transfer, patent, etc.

#### 【참고 문헌】

- 김광수, "상사조정제도에 관한 비교고찰(우리나라 조정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중재 제 274호, 대한상사중재원, 1994. 12.
- 김선정, '이유없는 중재판정,' 중재학회지 제4권, 한국중재학회, 1994.
- 김상수, "일본에 있어서의 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중재학회지 제2권, 한국중재학회, 1992.
- 김성수,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과의 비교를 통한 중재활성화," 한국중재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1996 5 17.
- 김성수, "외국중재기관과의 비교를 통한 중재활성화 방안," 중재 제277호(1995-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 김종수, "최근의 대외클레임 실태분석," 중재 제260호, 대한상사중재원, 1993. 10.
- 박대위, "중재와 중재인의 역할," 중재 제277호(1995-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 백승오, "중재사건의 실태분석과 동향(1990~1994)," 중재 제275호(1995-봄호) 대한상사중재원
- 손경한,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 중재 제277호(1995-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 손한기, "중국중재제도의 일고찰," 중재학회지 제3권, 한국중재학회, 1993.
- 양병희, "통일독일에 있어서의 중재제도," 논문집, 한국중재학회, 1991 11
- 유병현, "소련의 중재제도," 논문집, 한국중재학회, 1991. 11.
- 유성근, "국제법과 한국의 상사중재(중재지결정을 중심으로)," 중재논총(1972-1990), 대한상사중재원, 1991.
- 유해민, 김상호, 나기현,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법리와 전망에 관한 연구," 논문집, 한국중재학회, 1991. 11.
- 이순우, "상사분쟁의 신속성과 저렴성," 중재 제245호, 대한상사중재원, 1992 7

- 장문철, "외국판결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학회지 제3권, 한국중재학회, 1993.
- 장문철, "우리 중재제도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 중재 제263호, 대한상사중재원, 1994. 1.
- 장효상, "중공과의 경제교류에 따른 법적문제," 대한상사중재원, 1985
- 조정곤, "무역분쟁에서 상사중재판정모형의 개발," 중재학회지 제4권, 한국중재학회, 1994.
- 조정곤, "상사중재에서의 중재인선정과 전략게임," 중재학회지 제3권, 한국중재학회, 1993.
- 대한상사중재원, "21세기를 향한 상사분쟁해결 선진화(중재인을 통해 본 상사분쟁해결의 나아갈 길)," 중재 제274호, 1994. 12
- 松浦馨, "韓國·中國·日本の國際的 商事仲裁制度の相違點と共同的 紛争解決の方途," 仲裁學會誌 第3卷, 韓國仲裁學會, 1993. 12
- Tang, Houzhi,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China, 仲裁學會誌 第3卷, 韓國仲裁學會, 1993. 12.
- Ashenfelter, Orley and Bloom, David E., Models of Arbitrator Behavior: Theory and Evid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4, No.1 (March 1984)
- Bader, J. Lan, Arbitrator Disclosur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II, No 1, March, 1994.
- Born, Gary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Kluwer, 1994.
- Crawford, Vincent P., Compulsory Arbitration, Arbitral Risk and Negotiated Settlements: A Case Study in Bargaining under Imperfect Inform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XLIX, No.155 (January 1982).
- Mnookin, Robert H., Creating Value, through Process Desig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II, No.1, March, 1994.
- Tashiro, Conciliation or Mediation during the Arbitral Proces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II, No.1, March, 1994.
- Ury, William, Getting Disputes Resolved, Jossey-Bass, 1989.
- Zubrod, Donald E., Evident Partiality and Misconduct of Arbitrator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II, No.1, March, 1994.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Collection of the ICC Arbitral Awards 1986-1990.
-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Digest of SELECTED J.C.A.A. Arbitral Award. (1953-1973)